

남울산 노르웨이숲(조합원 취소분 2회차)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09. 04.(금)]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2-256-030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울산광역시 거주자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택지유형
				민간택지

1. 청약 및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사전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9.14.(월)	26.09.15.(화)	26.09.16.(수)	26.09.22.(화)	26.09.29.(화)~ 26.10.01.(목)	26.10.06.(화)~ 26.10.08.(목)
방 법	■(PC·모바일)청약오픈(09:00 ~ 17:30)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물주택	■(PC·모바일) 청약오픈(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청약오픈	■남울산 노르웨이숲 (주소: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동상로 34)	

2.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택과 ~ 31997호(2026.09.03.)로 입주자모집공고 소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동상로 34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3~26층 12개동 총 848세대 중 조합원 취소분 52세대

[특별공급 34세대(기관주택 6세대, 다자녀가구 8세대, 신혼부부 8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4세대, 신생아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예정일 : 2026년 10월 예정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종)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생아	계		
2026000420	01	059.9957A	59A	59.9957	21.0807	81.0764	33.4613	114.5377	32.4963	12	2	2	2	-	2	2	10	2	2
	02	059.9734B	59B	59.9734	21.7857	81.7591	33.4488	115.2079	32.4842	2	-	-	1	-	-	-	1	1	-
	03	074.5847A	74A	74.5847	25.0548	99.6395	41.5980	141.2375	40.3983	13	1	2	2	-	1	1	7	6	-
	04	074.9026B	74B	74.9026	26.0082	100.9108	41.7753	142.6861	40.5705	1	-	-	-	-	-	-	-	1	-
	05	084.9350A	84A	84.9350	28.1463	113.0813	47.3706	160.4519	46.0045	19	2	3	2	1	1	3	12	7	1
	06	084.4955B	84B	84.4955	28.6027	113.0982	47.1255	160.2237	45.7665	5	1	1	1	1	-	-	4	1	-
	합 계									52	6	8	8	2	4	6	34	18	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 ² , 세대)									
약식 표기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총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가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15일내)
59A	102	4층	1	12	89,100,000	234,900,000	324,000,000	5,000,000	11,200,000
	102	6층	1		89,925,000	237,075,000	327,000,000	5,000,000	11,350,000
	102	9층	1		89,925,000	237,075,000	327,000,000	5,000,000	11,350,000
	102	11층	1		91,850,000	242,150,000	334,000,000	5,000,000	11,700,000
	102	20층	1		93,775,000	247,225,000	341,000,000	5,000,000	12,050,000
	103	2층	1		88,275,000	232,725,000	321,000,000	5,000,000	11,050,000
	103	12층	1		91,850,000	242,150,000	334,000,000	5,000,000	11,700,000
	103	15층	1		91,850,000	242,150,000	334,000,000	5,000,000	11,700,000
	104	5층	1		89,925,000	237,075,000	327,000,000	5,000,000	11,350,000
	112	2층	1		88,275,000	232,725,000	321,000,000	5,000,000	11,050,000
	112	3층	1		86,350,000	227,650,000	314,000,000	5,000,000	10,700,000
	112	9층	1		89,925,000	237,075,000	327,000,000	5,000,000	11,350,000
59B	104	14층	1	2	90,750,000	239,250,000	330,000,000	5,000,000	11,500,000
	104	17층	1		90,750,000	239,250,000	330,000,000	5,000,000	11,500,000
	107	7층	1	13	112,750,000	297,250,000	410,000,000	5,000,000	15,500,000
	107	9층	2		112,750,000	297,250,000	410,000,000	5,000,000	15,500,000
74A	107	13층	1		114,950,000	303,050,000	418,000,000	5,000,000	15,900,000
	108	7층	1		109,450,000	288,550,000	398,000,000	5,000,000	14,900,000
	108	8층	1		109,450,000	288,550,000	398,000,000	5,000,000	14,900,000
	108	13층	1		114,950,000	303,050,000	418,000,000	5,000,000	15,900,000
	110	8층	1		109,450,000	288,550,000	398,000,000	5,000,000	14,900,000
	111	3층	1		111,650,000	294,350,000	406,000,000	5,000,000	15,300,000
	111	4층	1		111,650,000	294,350,000	406,000,000	5,000,000	15,300,000
	111	9층	1		112,750,000	297,250,000	410,000,000	5,000,000	15,500,000
	111	10층	1		114,950,000	303,050,000	418,000,000	5,000,000	15,900,000
	111	15층	1		114,950,000	303,050,000	418,000,000	5,000,000	15,900,000
74B	108	10층	1	1	113,025,000	297,975,000	411,000,000	5,000,000	15,550,000
	105	12층	1		132,000,000	348,000,000	480,000,000	5,000,000	19,000,000
	105	15층	1		132,000,000	348,000,000	480,000,000	5,000,000	19,000,000
	106	2층	1		126,500,000	333,500,000	460,000,000	5,000,000	18,000,000
	106	7층	1		129,250,000	340,750,000	470,000,000	5,000,000	18,500,000
	106	12층	1		132,000,000	348,000,000	480,000,000	5,000,000	19,000,000
	106	14층	1		132,000,000	348,000,000	480,000,000	5,000,000	19,000,000
	106	17층	2		132,000,000	348,000,000	480,000,000	5,000,000	19,000,000
	106	18층	1		132,000,000	348,000,000	480,000,000	5,000,000	19,000,000
84A	106	19층	1	19	132,000,000	348,000,000	480,000,000	5,000,000	19,000,000
	106	22층	1		134,475,000	354,525,000	489,000,000	5,000,000	19,450,000
	106	23층	2		134,475,000	354,525,000	489,000,000	5,000,000	19,450,000
	109	6층	1		129,250,000	340,750,000	470,000,000	5,000,000	18,500,000
	109	7층	1		129,250,000	340,750,000	470,000,000	5,000,000	18,500,000
	110	3층	1		127,875,000	337,125,000	465,000,000	5,000,000	18,250,000
	110	8층	1		129,250,000	340,750,000	470,000,000	5,000,000	18,500,000
	110	10층	1		132,000,000	348,000,000	480,000,000	5,000,000	19,000,000
	110	14층	1		132,000,000	348,000,000	480,000,000	5,000,000	19,000,000
84B	105	18층	1	5	128,150,000	337,850,000	466,000,000	5,000,000	18,300,000
	105	20층	1		130,625,000	344,375,000	475,000,000	5,000,000	18,750,000
	109	11층	1		128,150,000	337,850,000	466,000,000	5,000,000	18,300,000
	110	3층	1		124,300,000	327,700,000	452,000,000	5,000,000	17,600,000
	110	5층	1		125,400,000	330,600,000	456,000,000	5,000,000	17,800,000
									433,200,000

■ 분양대금 납부방식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07-0126-5316-03	우리자산신탁(주)

3.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 분	내 용	
공급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 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개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권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주택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자격 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3-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	--	----------------------------------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을 받은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대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 지방 중소기업청업정 지역정책과

3-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8세대
--------------------------------------	--	----------------------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한 신청 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임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3-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8세대
-------------------------------------	--	----------------------------------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생아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3-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	--	---------------------

구 분	내 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